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1

# 부 산 고 등 법 원

## 창원제1행정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(창원)2019누11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주식회사 A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장 |
| 제1심 판결 | 창원지방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구단10611 판결 |
| 변론 종결 | 2019. 10. 30. |
| 판결 선고 | 2019. 11. 27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9. 10.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에 기재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 포함)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## 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1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, 달리 가산세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).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준용

판사 안좌진

판사 서범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1

별지

| 순번 | 과세물건 | 취득세 (가산세) | 취득세 가산세 | 농어촌 특별세 |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| 지방 교육세 | 지방 교육세 가산세 | 소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차량 (L) | 2,204,180 | 683,290 | - | - | - | - | 2,887,470 |
| 2 | 차량 (M) | 2,204,180 | 780,500 | - | - | - | - | 2,984,680 |
| 3 | 차량 (N) | 665,630 | 384,460 | - | - | - | - | 1,050,090 |
| 4 | 차량 (O) | 3,566,430 | 1,360,230 | - | - | - | - | 4,926,660 |
| 5 | 차량 (P) | 3,351,340 | 1,478,270 | - | - | - | - | 4,829,610 |
| 6 | 차량 (Q) | 3,500,000 | 1,643,600 | - | - | - | - | 5,143,600 |
| 7 | 차량 (R) | 665,630 | 399,240 | - | - | - | - | 1,064,870 |
| 8 | 부동산([redacted]시 S | 95,600,000 | 61,556,840 | 4,780,000 | 2,599,840 | 9,560,000 | 5,199,680 | 179,296,360 |
| | 합 계 | | | | | | | 202,183,340 |